

“越南對 國際法”

崔 鐘 起

(副 教 授)

Vietnam and International Law

By Lawyers Committee On American
Policy Towards Vietnam.

O'Hare Books.

Ten Bartley Road, Flanders,
New Jersey, 1967.

越南에 對한 美國政策에 關한 法律家委員會(The Lawyers Committee on American Policy Towards Vietnam)는 1965年 3月 美國務省이 “越盟에 對한 美國의 行動에 對한 法的根據”라는 覺書를 發表한 後에 構成 되었다. 美國의 越南戰에 對한 美國務省의 覺書에 對한 批判과 國際法上의 問題點에 關하여, 美國의 著名한 學者들로 構成된 同委員會는 13章으로 나누어 理論을 展開하고, 附錄에 “越南戰에 對한 美國의 參與의 法的性格”을 밝힌 國務省의 覺書등을 收錄하였다.

第1章에는 “先例가 없는 美國의 越南戰介入의 性格은 가장 嚴重한 法的인 分析이 必要”하다는 點을 指摘하였다.

越南戰에 對한 美國의 行動은 歷史의으로 先例가 없으며, 어떤 政府도 外國의 內亂에 干涉한다는 것은 決코 없었다. 어떠한 國家도, 集團의 自衛權이라는 名義에서 그와 같은 破壞의 軍事行動에 從事한 바는 없다고 指摘하였다.

즉 越南戰을 越南의 內亂으로 規定하고, 「유엔」事務總長을 비롯한 「로마」教皇 및 宗教指導者, 國家의 元首, 學者, 知識人, 藝術家等의 反對輿論과

呼訴는 美國의 그와 같은 政策을 포기할 것을 촉 용하였다고 밝히었다.

이 分析은 可能한 簡潔하게 美國務省의 法理論의 覺書를 法律의으로 檢討하기 위한 것이고 이 檢討는 邊法主義에 關聯된 것이 아니고 世界秩序의 基本原則에 問題가 되는 바를 分析하는 것이라고 同委員會의 報告書는 그 意義를 밝하고 있다.

第2章에는 越南에 對한 基礎的 事實에 關하여 論하였는데, 여기서는 越南의 史的背景과 흐름을 檢討하였다. 美國務省의 覺書에는 美國이 “Vietnam”을 防衛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主張은 虛偽이며 다만 美國은 “country” of “South Vietnam”에 對해 援助하고 있으며, 美國이 南北越南을 同時に 防衛할 수 없고, 防衛하지도 않으면서 美國이 全越南을 防衛하는 것이 아니고, 始初부터 美國은 臨時的인 越南의 分斷을 恒久化하고, 分離하여 越南(South Vietnam)이라는 “country”를 만들었다고 指摘하고, 美國務省의 覺書는 事實面과 法的인 解釋에 疑問點이 許多하다고 指摘하였다.

第3章에는 美國의 越南戰介入은 國際聯合憲章

을違反하는 것이라는點을論하였다.

먼저 ① 美國의 干涉은, 集團自衛權에 依하여合法화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指摘하였다.

越南戰에 對한 美國의 介入를 支持하는 側은, 美國은 越南政府로 부터 援助要請을 받고 이에 立脚하여支援하고 있다고指摘하고 美國務省覺書에서도 이點을 밝하고 있다. 美國은 越盟이나 「베트콩」에 依한 武力攻擊에 對해 自體를 防衛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憲章과 國際法의 一般原則은, 美國의 干涉에 對한 다만 하나의 正當化하는 可能성이 있다면 그것은 所謂 美國이 集團自衛權을 行使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外에는 武力使用을 正當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② 憲章에 依하면 集團의 自衛는 다만 “武力攻擊”的 경우에만 許容된다. “武力攻擊”的存在에 對하여는 國務省覺書에 의하여는指摘되어 있지 않았다.

外部의 軍事的介入(集團의自衛)은 다만 特別한 危難, 緊急한 事態인 소위 武力攻擊이 있는 경우에 限하여 許容되는 것으로, 越盟에 依한 越南에 對한 武力의 行使는 「유엔」憲章의 第5條가 規定하고 있는 바와 같은 “武力攻擊”으로 看取한다는 것은 適當치 않다고指摘하였다.

③ 集團의自衛는 主로 1次의으로는 被害를 입은 國家의 權利이다.

侵略의 戰略이 國際的으로 罪惡이란 것은 20世紀初부터였으며, 1928年の Kellogg-Briand Pact는 第3國이 攻擊을 받은 國家의 便에 서서 戰爭에 介入하는 如何한 權利도 認定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國家政策의 하나의 方策으로서 戰爭을 포기하는 絶對的인 義務를 지니는 것으로, 如何한 紛爭의 解決도 平和的手段에 依하는 外에는 認定을 않고 있다.

④ 越南政府의 要請이 “集團自衛”에 對한 法的根據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憲章規定의 意義는 다만 “유엔”會員國은 集團自衛權을 呼訴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越南戰에 對한 美國의 軍事의 介入은 越南에 對한 “武力攻擊”이 없었으므로 不法이며, 設使 越南이 獨立國이었고, 「유엔」會員國이라 하더라도 美國의 介入은 不法이라고 밝혔다.

美國務省은 獨立國이건, 屬領이건, 越南과 같이

外國의 軍事援助를 要請할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美國務省의 聲明은 眞實이 아니고, 誤謬에 차있다. 美國은 越南(South Vietnam)을 “南部越南共和國”(Republic of Vietnam in the south) 혹은 다른 名稱으로 承認하지 않고 美國은 英國과 함께 1950年 2月 7日(the whole of) “Vietnam”으로 承認하였으며 越南이 2個地帶로 分離되기 4年前에 承認하였던 것이다. 1954年前後, 美國과 다른 나라는 「사이공」政府에 對하여서만 外交의 承認을 하고 「하노이」政權으로 부터는 外交의 承認을 撤回하였다. 越南共和國(Republic of Vietnam)名稱下에 分離된 後 「사이공」政府와 外交的關係를 맺은 國家들이 있는 것이 事實이나, 이 事實이 「사이공」政府가 全越南(whole of Vietnam)에 對한 合法政府라는 主張을 支持하는데 必要한 것은 아니라는 點을指摘하였다.

第4章은 美國의 越南戰의 軍事的介入은 1954年の「제네바」協定을違背하는 것이라는 點을 들고 있다.

첫째로, 越南은 1954年の「제네바」協定規定으로, 統一을 위한 1956年選舉를妨害한 것은 正當化되지 않는다. ① 「제네바」協定은 「캄보디아」「라오스」및 越南의 統一과 獨立을 保障하며 如何한 이들 國家의 分斷을 許容하고 있다.

② 越南은 「제네바」協定의 選舉規定에 의하여拘束되어 있다.

③ 越南은 이러한 諸規定을違反하는 것이 正當化되지는 않는다. 美國이 「디엠」(Diem)政權에 對하여 1956年選舉를妨害하도록 聲援한 것은, 美國이 스스로 「제네바」協定을違反한 것이다.

둘째로, 美國의 越南內의 軍事施設建設은 正當化되지 않는다.

1956年 7月까지 統一을 期約하는 見地에서 「제네바」協定은 越南에 外國軍事施設建設을 막고 있으며, 이것은 이나라를 非武裝化와 中立化를 하도록範圍를 定하고 있는 것이다. “越南에 如何한 軍隊의 增強이나 追加兵力의 投入은 禁止되어 있다.” (제네바協定第16條) 또한 “越南領土에 對한 새로운 軍事基地의 設定도 禁止되어 있다”(同第18條). 外國軍人에 對하여는, 다만 人員에 對한 交替에 限하여서만 許容되어 있다고指摘하였

다.

① 越南內의 美國의 軍事施設建設은 1961年末까지는 「제네바」協定에 依하여 許容된 制限範圍에서 行하여졌다는 것은 不正確한 것이라고 論하였다.

② 1961年末 以來 軍事施設을 建設하는 것이 「제네바」協定에 違反되지 않고 法的으로 正當하다는 美國의 主張은 不正確한 것이라고 論하고, 美國務省覺書에서, “共產主義者の 侵略이 1961年末부터 增加되어, 美國은 1961年末부터 越南에 美軍과 새로운 軍備를 導入하고, 增加시킨 것은 「제네바」協定에 規定한 制限內에서 한것”이라고 主張하나, 그것은 國際監視委員團이 指摘한 바 있듯이, 美國이 同協定을 違反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째로, 美國의 參戰은 “1965年 2月 以前”에 일어난 確實視된 “武力攻擊”에 앞서 始作된 것이라고 論하였다.

第5章에는 美國의 越盟에 對한 戰爭行爲는 “報復”으로서 始作되었으며, 이 報復은 不法이었다고 指摘하였다.

1965年 2月2일에 美國에 依한 擴戰措置는 “顧問”的 形態로서의 軍事的參與가 越南에서 美國의 戰爭行爲로서 變하였고, 美國의 戰爭行爲는 越南에 까지 擴大되었다고 밝히었다. 美國務省覺書는 이 戰爭行爲를 合理化시키는데 있어서, 集團自衛, 혹은 「유엔」憲章, 「씨토」, 「제네바」協定, 혹은 다른 協定 혹은 公約에 依한 것이라고 主張하려 들지 않고, 越盟에 對한 擴戰은 하나의 報復으로서 公式的으로 說明하고, 越南에서의 戰鬪行爲에 對하여는 特別히 說明을 않고, 다만 報復의 理論으로 說明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報復은 不法이었다고 指摘하였다.

第6章에는 設使 美國이 越南의 集團自衛로 適法의으로 參戰하였다고 하여도, 戰爭方法이 不法의었다는 點을 들고 있다.

即 自衛의 行動은 過剩이거나, 不合理的이어서는 안되며, 自衛의 必要性에 依하여 合法의인 行動도 그範圍를 維持하고, 制限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點을 들고 있다. “集團的 自衛”는 陸海空軍에 依한 全人口에 對한 組織의破壞를 招來하는 權利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論하였다.

第7章에는 内亂에 對한 外國의 軍事的介入은 國際法下에서는 違法이라는 點을 論하였다.

① 越南의 紛爭은 하나의 内亂이라고 보고 있으나, 美國의 立場은 越南戰이 内亂이 아니고, 外部의 侵略(越盟으로 부터의 武力攻擊)에 抵抗하는 것이라고 보는 點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② 國際法은 内亂에 對한 外部의 干涉을 禁하고 있다.

「유엔」憲章第2條 7項의 内政不干涉의 原則은 内亂의 경우에도 適用되는 것이라고 보며, 實際 國際法學者間의 意見은 不干涉의 義務를 強調하고 있는 것이라고 論하였다.

第8章은 1954年的「씨토」(SEATO) 條約은 美國의 越南戰에 對한 軍事的介을 “誓約”하고 있지 않다는 點을 들고 있다.

① 「씨토」 義務의 主張은 그것이 늦어짐으로서 評判을 나쁘게 했다.

② 實際, 美國의 越南戰介入은 「씨토」條約에 違反되는 것이라고 指摘하였다.

① 同 「씨토」條約第1條는 「유엔」憲章을 遵守한다고 規定하여 놓았으며, 第6條에는 憲章下의 義務에 影響을 미치는 如何한 方法으로도 「씨토」條約을 解釋하지는 못한다는 點을 強調하고 있다.

ii 「씨토」條約은 當事國이 「제네바」協定을 尊重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美國務省覺書는 重要的點에서 「씨토」條約를 잘못 引用하였다고 指摘하고, 美國이 越南에서 戰鬪行爲를 始作하였을 때에 「씨토」加盟國은 召集되지도 않았었다. 그것은 아마도 同意를 얻지 못하리라는 可能性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論하였다.

第9章에서는 美國은 「유엔」에 對한 義務를 完遂하지 않고 있다는 點을 지적하였으며, 安全保障理事會는 美國의 越南에서의 軍事活動을 默認하지 않고 있다고 論하였다.

美國務省覺書는 美國이 安全保障理事會에 戰爭에 對한 措置를 取한 後에 “措置를 取하였다”는데 關하여 報告하였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다. 美國務省覺書는 美國이 “紛爭에 對한 「유엔」의 配慮로서 干涉을 한 것이 아니며,” 安全保障理事會는 “行動을 하기위하여는 適用하지 않으며”, 그것은 越南에서의 美國政府의 方向을 默認하고 있다고 主張

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推定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問題는, 美國이 「유엔」에 決議案과 報告를 提出하였는지의 與否 보다는, 美國이 組織化된 國際社會에 對하여, 그들 國民에게 이 나라를 戰爭으로 부터 救하기 위한 憲法規定을 모든豫算歲出을 使用하면서 義務를 다하였느냐하는데에 달려있다고 論하였다.

第 10 章에서는 美國은 「유엔」憲章에 規定된 平和的 解決追求에 失敗하였다는 點을 論하였다.

第 11 章에는 越南戰에 對하여 美國은 「아이젠하워」大統領이나 「캐네디」大統領도 “誓約”을 하지 않았다는 點을 들고 있다.

「아이젠하워」大統領은 그의 行政府가 越南에 對한 “軍事的支援이란 用語로서 言質을 한바 없고 「캐네디」大統領도 越南戰은 “그들의 戰爭”이고, 다만 軍備와 軍事顧問官을 約束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確信”은 美國이 越南에서의 軍事的行動을 取하도록 言質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點을 指摘하였다.

第 12 章은 越南에서 美國이 軍事行動을 取하는 程度로 美國은 國際條約을 違反하고, 美國의 憲法을 違背하고 있다고 論하였다.

美國의 憲法은 批准된 條約은 國家의 最高法으로 看做하므로, 그와 같은 條約違反은 亦是 憲法違反이 되는 것이라고 指摘하였다.

美國의 越南과 越盟에 對한 行動은 美國의 憲法節次에 依해 한 當事者가 된 條約을 違反하였고, 이와 같은 戰爭은 美國이 主要 設立者이었던 「유엔」憲章을 違反하는 것이다. 이러한 行動은 國家의 最高法을 違反하는 것이라고 指摘하였다.

美國憲法은 戰爭介入에는 正式 宣戰布告를 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그것은 오직 議會에 依하여 시만이 行할 수 있게 되어다.

美國務省覺書는 1789 年以來, 大統領은 125 次나 議會의 同意를 얻기 前에 兵力의 海外出動을 命令한바 있으며 韓國動亂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例示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125 次의 경우는, 大部分의措置가 그와 같은 干涉을 國際法에서 禁하고 있기 以前의 경우이다. 1945 年의 「유엔」憲章으로 國家

의 兵力を 海外에 投入하는 것에 對한 法的制限을 두는 것이 確立되었다고 指摘하였으며, 1950 年 「트루만」大統領의 韓國派兵은 安全保障理事會의 決議의 執行이었다고 論하고, 그와 같은 “制裁”는 「유엔」의 權威機關에 依하여 許容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第 13 章은 結論으로서 美國의 越南戰介入은 國際法의 基本的인 몇 가지 原則을 違反한 行動이라고 끝을 맺고 있다.

그 理由로서, 越南에서의 美國의 政策은 1954 年의 「제네바」協定에 違反되는 武力使用이고, 1945 年의 「유엔」憲章, 1928 年의 Kellogg-Briand Pact 및 몇 가지 一般國際法의 原則에 違反되는 것이라고 指摘하였다.

① 美國은 越南을 위하여 “集團自衛”的 行動이라고 主張하나, 이것은 「유엔」憲章 第 51 條의 集團自衛에 違反하는 것이다.

② 越南에서의 美國의 軍事的介入은 「유엔」憲章 第 2 條 4 項의 武力使用禁止의 條項에 根本의 으로 違反된다.

③ 美國은 「유엔」憲章 第 33 條 1 項의 國際紛爭을 平和的인 手段에 依해 解決을 追求한다는 것을 拒否하였다.

④ 美國은 越南에서의 如何한 事態進展을 防止하기 위한 目的으로 1954 年의 「제네바」協定에 依하여 미련된 機關의 適切한 活用을 拒否하였다.

⑤ 美國務省은 越南에 對한 越盟의 武力攻擊은 1965 年 2 月 17 日 以前에 일어났으며, 同日字로 美國은 明白히 戰爭行爲를 始作하였다. 1961 年부터 1965 年初까지 4 年間 越南에서 美國의 軍事의 武力使用은 不法이었다. 美國務省은 이 分析에 同意하고, 武力攻擊은 “集團自衛”的 原則下에 美國에 依하여 武力使用을 正當화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⑥ 1965 年 2 月, 美國이 越盟에 對한 戰爭行爲를 始作하였을 때, 美國은 公式으로 이 戰爭行爲는 報復에 依한 것이라고 宣言하였다. 國際法下의 報復은, 이 戰爭行爲가 不法의 報復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⑦ 美國은 1954 年의 「제네바」協定을 越南으로 하여금, 소위 南北越南을 單一政府下에 두기 위한

國際監視下의 總選舉의 義務를 履行치 않도록 教唆하였다.

⑧ 美國은 越南을 軍事同盟으로 이끌고 越南에 外國軍事施設을 建設함으로서 1954年の 「제네바」協定의 基本條項을 違反하였다.

⑨ 越南內에 龐大한 美國의 兵力의 投入과 軍備導入은 越南內에 如何한 外國軍事施設建設을 禁하고 있는 「제네바」協定의 條項을 違反하였고, 이와 같은 結論은 國際監視委員團에 依하여 確認되었다.

⑩ 越南에서의 美國의 戰爭行爲는 「씨토」에 依하여 承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事實 이에 違背되고 있다.

11. 設使 美國이 越南에서 合法的으로 戰爭에 臨하였다고 하여도, 戰爭方法이 戰時 國際法의 規則과 慣行을 違反하는 不法處事였다.

結論으로, 同委員會에서는 美國政府가 國際法秩序라는 見地에서 軍事的 介入을 再考하여 줄것을 要請하고, 이러한 要請은 國家의 necessity에 依하여 至急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署名한 學者 12名은 上記와 같은 法律의 分析과 結論에 合意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라고 끝을 맺었다. 이에署名한 同委員會 委員은, Richard A. Falk, John H.E. Fried, Richard J. Barnet, John H. Herz, Stanley Hoffman, Wallace McClure, Sacal H. Mendlovity, Richard S. Miller, Hans H. Morgenthau, William G. Rice, Burns H. Weston, Quincy Wright 등 教授이다.

美國務省覺書

附錄에는 1966年 3月 4日 美國務省이 發表한 “美國의 越南戰防衛에 參戰한 正當性”이라는 覺書全文을 收錄하였다. 美國務省覺書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1. 美國과 越南은 國際法下에서 越南에 對한 武力攻擊에 對한 集團自衛에 參與할 權利를 갖고 있다.

① 越南은 共產越盟에 依한 武力攻擊對象이 되고 있다.

② 國際法은, 武力攻擊에 對한 個別的 및 集團의 自衛權을 認定하고 있다.

③ 越南에 對한 경우, 個別的 혹은 集團의 自衛權을 適用하는 것은 그 나라가 「유엔」會員國이거나

아니거나에 關係가 없는 것이다. 越南은 自衛權을享有한다.

④ 個別的, 集團의 自衛權의 適用은 越南이 獨立된 主權國이거나 아니거나에 關係되지 않는다. 越南은 自衛權을享有한다. 美國은 越南의 集團防衛에 參與하는 것은, 越南이 하나의 獨立主權國家의 與否에 關係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⑤ 「유엔」憲章은 地域機構에 對한 自衛權을 制限하고 있지 않다.

⑥ 美國은 「유엔」에 對한 義務를 充분히 다하고 있다.

⑦ 國際法은 武力攻擊에 對한 自衛措置를 取하는데 하나의 事前條件으로 宣戰布告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⑧ 結語로서 以上과 같은 理由에서 越南은 現事態下에서 越盟으로부터 武力攻擊에 對한 自體 防衛를 위해 다른 나라와 集團自衛를 組織할 수 있고 越南의 要請에 따라 美國이 防衛에 參與한 것이고 侵略者에 對한 直接的인 行動을 取한 것이다. 이와 같은 美國의 越南戰介入은 國際法에 一致되며, 「유엔」憲章의 義務를 다하는 것이라고 同國務省覺書는 主張하고 있다.

2. 美國은 越盟으로부터의 共產侵略에 對한 越南防衛를 援助하기 위한 言質의 保證을 하였다.

3. 美國과 越南에 依한 行動은 1954年的 「제네바」協定下에서 正當한 것이다.

① 「제네바」協定의 叙述

② 越盟은 「제네바」協定의 初期부터 이를 違反하였다.

③ 美國의 兵力 및 裝備導入은 正當한 것이다.

④ 越南은 「제네바」協定의 選舉條項의 執行에 對한 拒否는 正當화된 것이었다.

4. 美國大統領은 越南의 集團防衛에 美國의 兵力を 投入하는 全的인 權限을 갖고 있다.

① 憲法 第2條下의 大統領의 權限은 最近의 越南事態에서 取한 行動에 對하여도 擴大解釋할 수 있다.

② 「씨토」는 大統領의 行動을 承認하고 있다.

③ 1964年 8月 10일의 兩院合同會議의 決議文은 美國이 越南의 集團自衛에 參與하는 것을 承認하였다.

④ 議會에 依한 宣戰布告없이는, 美國이 越南의 集團自衛에 參與하는데 關한 承認을 必要로 하지 않는 않는다.

5. 結論(美國務省覺書)

越南은 共產越盟에 依한, 兵力의 侵透, 軍裝備 및 定規軍에 依한 武力攻擊을 받아왔다. 國際法은 武力攻擊에 對한 個別的, 集團의 自衛權을 認定하고 있다. 美國과 越南은, 越南의 要請에 立脚하여 越南의 集團防衛에 從事하고 있다. 이와 같은 行動은 「유엔」憲章과 國際法에 一致되는 것이다.

美國은 越盟으로 부터의 共產侵略에 對한 自體의 防衛를 위한 越南을 援助한다는 言質을 하였다. 美國은 1954年「제네바」會談의 效率의인 結論을 맺기 위하여 言約을 하였다. 그後 美國은 共產武力侵略에 對抗하기 위해 越南防衛를 위한 「씨토」條約의 國際의義務를 지니고 있다. 美國은 越南政府에 對하여 追加保障을 주어왔다.

1954年的「제네바」協定은 休戰과 越南을 南北 2個地帶로 分斷하고, “將次의 侵略政策” 혹은 敵對行爲를 禁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제네바」協定締結 初期부터 越盟은 同協定을 違反하고 兵力에 依한 越南支配를 劇策해 왔었다. 이러한 越盟側의 違反事項등에 따라, 1961年末美國은 越南防衛를 위해 軍事施設및 兵力を 投入한 것이며, 이것은 合法의인 것이고 一方에 依한 國際協定의 違反은 他方이 同協定下의 一致된義務를 完遂하는 것을 保留하는 것이 許容되는 것이다.

美國大統領은 越南의 集團防衛의 美軍을 投入하는 言質에 對한 全의인 權限을 갖고 있다는 點등을 들고, 美國의 越南戰參與는 適法行動이라고 主張하면서 結論을 맺었다.

× ×

以上으로서 越南戰에 對한 國際法上의 問題點에 關한 美國教授들로 構成된 法律家委員會의 見解와 美國務省의 覺書內容을 檢討하여 보았다.

越南事態는 確實히 複雜하고, 龙大 한人的資源과 武器등 大規模의 소모戰이라고 볼 수 있다. 最新武器가 장글 戰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交錯狀態가 持續되고 있으며, 全世界의 耳目가 集中되고 있다.

國際社會는 國內社會에서와 같이 어떠한 事態, 어떠한 問題에 對하여서 어느 立場, 혹은 어떠한

角度에서 問題點을 把握하고 分析하느냐에 따라 結果는 正反對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越南戰만 하더라도, 美國務省覺書에서는 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集團防衛權에 依한 適法措置로서 「유엔」憲章과 國際法에 一致되는 行動”이라는 結論을 主張하고 있는데 比하여, 美國教授들의 集團인 法律家委員會의 見解 越南戰은 “하나의 内亂”이라고 보고, 이에 對한 美國의 軍事의인 介入은 「유엔」憲章과 國際法에 違反되는 것이고, 韓國動亂의 경우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決議(蘇聯不參)에 따르는 適法措置이었으나, 越南戰은 「유엔」機關을 通하지 않은 美國의 一方의 内亂干渉이고, 1954年の「제네바」協定의 違反이라는 點등을 들어서 美國務省覺書와는 正反對의 對照의인 結論을 내리고 있다.

如何間에 越南戰은 第2次 世界大戰以來 局地戰으로는 가장큰 戰爭이라 할 수 있고 同事態에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인 美國이 當事者가 되어 있으므로, 이에 對한 「유엔」의 措置는 期待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國際社會의 平和維持機構로서의 「유엔」은 強大國의 協調를前提로 하였던 期待可能性은 強大國이 어떠한 利害當事國이 되는 경우에는 「유엔」은 그처럼 無力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國際社會의 權力政治, 힘이 強한 強大國의 行動에 對하여는, 國際輿論이나 制裁등은 全히 無色해지고 國際法秩序, 正義등은 한낱 口號에 不過한 것으로 轉落해 가고 있다. 強者에는 弱하고, 弱者에게는 強한 것이 國際社會일까? 「항가리」事態 「체코」事態 등은 이와 같은 人類의 國際法秩序, 正義에 對한 期待에 너무나 否定의인 現實을 露呈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諸事態는 國際法秩序 以前에 피비린내 나는 政治라는 現實속에서 그냥 둔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強大國이 當事國으로서 힘에 依한 權力政治, 國際政治의 現象이라고나 탓할 일일뿐일까. 無고, 그쁜 것은 後世의 歷史家가 모든 現實을 正確히 分析 記錄할 것으로 믿으며, 越南戰이라는 事態에 對하여 賛反兩側의 法理論이 體系化되어, 簡潔하게 要約된 同著는 이分野를 研究하는 學徒에게 좋은 參考가 될 것으로 確信한다.